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여권법」이 개정(법률 제 20905호, 2025. 4. 8. 공포, 2025. 10. 9. 시행)됨에 따라,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법정대리인 동의 생략의 구체요건 규정

- 1)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불가 사유(소재불명, 사망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여권 발급에 동의할 수 있는 주체를 ‘보호자’로 규정한 조항 신설(제4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심사 예정

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법정대리인 동의를 예외)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(「민법」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 이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)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
2.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후 여권 발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
3.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·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후 여권 발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
4.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법정대리인 동意的 예</u> <u>외)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</u> <u>18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</u> <u>(「민법」에 따른 친권자, 후견</u> <u>인 이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</u> <u>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</u> <u>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</u> <u>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</u> <u>인 사람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</u> <u>말한다)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</u> <u>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</u> <u>1.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</u> <u>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</u> <u>신고가 접수되는 등 법정대리</u> <u>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</u> <u>2.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후 여</u> <u>권 발급에 대한 동의를 할 수</u> <u>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</u> <u>3.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</u> <u>친권의 상실·일시 정지 또는</u> <u>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후</u> <u>여권 발급에 대한 동의를 할</u>

	<u>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</u> <u>경우</u> <u>4.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법정</u> <u>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발</u> <u>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</u> <u>경우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외교부 여권과	
연 락 처	(02) 2002 - 0133